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0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문진석 · 정준호 · 박정현
복기왕 · 안태준 · 윤종균
채현일 · 김교홍 · 전용기
손명수 · 이재관 · 이주희
김종민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 32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한 협회는 해당 관리대장 사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의4 중 “제39조의2제2항에”를 “제39조의2제3항에”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이 법에 규정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항”으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5.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6.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7. 제25조에 따른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의 비치·관리
 8.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9.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 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 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 경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서를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 출 받은 협회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건 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 매매관리대장을 작성한 협회는 해당 관리대장 사본을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u>

<u>③ · ④</u> (생 략) 제3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1. ~ 9의3. (생 략) 9의4. <u>제39조의2제2항에</u>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생 략) ② (생 략)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u>이 법에 규정된</u>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출하여야 한다.</u> <u>⑤ · 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7조(수수료 등) ① ----- -----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u>제39조의2제3항에</u>----- -----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 ----- ----- ----- ----- ----- --<u>다음 각 호의</u>----- -----. 1. <u>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u> 2. <u>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u> 3. <u>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u>
---	---

<u><신 설></u>	<u>의 말소</u> 4.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u><신 설></u>	<u>검사</u> 5.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u><신 설></u>	<u>의 등록</u> 6.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u><신 설></u>	<u>자의 변경신고</u> 7. 제25조에 따른 중고건설기계
<u><신 설></u>	<u>매매관리대장의 비치·관리</u> 8.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
<u><신 설></u>	<u>사면허의 발급</u> 9.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
<u><신 설></u>	<u>사면허의 취소·정지</u>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u><신 설></u>	<u>정하는 업무</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관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 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 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 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④ -----제3항에----- ----- ----- ----- -----

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u>운영</u>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 ⑤ ----- ----- -<u>운영</u>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u>운영</u>- ----- ----- -----. ⑥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의 구축·<u>운영</u>, 제3항--- -<u>제4항</u>에----- ----- -----.
---	---